

용인시골프협회 회장선거규정

제정 2017. 03. 02.

개정 2021. 03. 16.

개정 2024. 12. 11.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또는 기본규정) 제24에 따라 협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 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 조(적용범위)

① 협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종목단체규정’ 또는 협회 정관(또는 기본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 회장 선거는 용인시체육회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시행 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협회와 관계”된 사람은 협회, 협회 회원단체, 협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 또는 협회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정당의 당원
 3.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 ④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한다.
 - 1.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4.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면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일)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협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협회 또는 체육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 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7조(선거인)

- ① 정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 회원단체 및 용인시 규모연맹체의 임원
 3. 구 회원단체의 임원
 4. 지도자
 5. 심판

6. 선수

7. 체육동호인

-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만 18세 이상일 것
 - 2. 선거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고 재임하고 있어야 함
 - 3. 선거인이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3항 제3호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체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협회의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 ⑥ 후보자, 본 회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 등 명단 제출)

- ① 본 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에서는 선거인 추첨을 위하여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동의서’라 한다.)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단체 등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 등에 대한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 ①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 회원단체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시·군 회원단체의 임원 1명
 -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 다. 심판 1명
 - 라. 선수 1명
 - 마. 체육동호인 1명
 - 바.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 1명
3. 용인시 규모연맹체의 임원 2명

-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용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전에 실시하는 첫 회장선거는 (구)국민생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협회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협회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가 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협회를 제외하
나머지 용인시 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
용한다).

제11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협회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협회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용인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열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 1통을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정관(또는 기본규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장은 그다음 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 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 또는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 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 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7항까지를 따른다.

⑨ 협회 임직원이 시도 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위원회는 제6조(선거일) 제5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0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9.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협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9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경기도 중목단체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경기도중목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 행위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선거방법 등)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5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별지 제9호 서식’)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협회(연맹)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

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27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단아야 한다.

제28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개표방법 :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하며, 개표 사무는 협회(연맹)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권장.

1. 투표서의 확인, 2. 유효·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

* 무효투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이며,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0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0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기표용지를 공개한 것.

* 개표결과 보고서의 작성 :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날인.

제29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중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증가 가능. 현 비율은 최소기준.

*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를 득표한 경우의 기탁금 처리는 협회(연맹)가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당선 결정

제31조(당선인 결정)

-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2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또는 기본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3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또는 용인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4조(전자투표 및 개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35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36조(보궐선거)

-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또는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기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그 밖의 사항)

협회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또는 기본규정)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0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경기도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용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용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에 한해서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이 규정 제4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선거인수의 배정의 제한)

이 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1. (구)시·군경기단체와 (구)시·군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양단체가 통합을 하여 시·군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시·군종목단체를 설립하였더라도 경기도체육회의 권고 또는 용인시체육회의 종목단체규정 등

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2. (구)시·군경기단체와 (구)시·군종목별연합회가 비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경기도체육회의 권고 또는 용인시체육회의 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VIP, 동골매 등)

[별지 제2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한자:)
2. 생 년 월 일:
3. 등 록 기 준 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8. 계 좌 번 호: ○○ 은행 ○○○-○○○-○○○○○○○○ (신청자와 입금주 동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용인시골프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일 일 일
월 월 월
년 년 년

신청인 ○ ○ ○ (인)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회장선거규정 제13조제2항의 서류
2. 이력서 1부.(자율 양식)

- 주: 1. 성명은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외에 해당 법령이나 기본규정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용인시골프협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용인시골프협회 규약(또는 기본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 후보자

-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절-----취-----선-----

접수증

- 후보자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경기도○○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7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보자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번호 :
- 사퇴사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용인시골프협회 회장선거의 입후
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공 고

용인시골프협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연번

제○대 용인시골프협회장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기호	1	2	3	4
후 보 자 성 명				
기표란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1. 후보자 성명 :
- 2. 참관인 인적사항

구분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본 인 승 낙 서

1. 소 속:
2. 직 위(직 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 화 번 호:

위 본인은 「회장선거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투표·개표) 참관
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표결과 보고서

1. 개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1		
2		
3		
4		
무 효 표		
계		
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용인시골프협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용인시골프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①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이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용인시골프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시골프협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2.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위탁금 반납 시 사용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장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용인시골프협회 선거 관련 대의원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2. 징계사실	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3. 임원결격사유 4. 사직 퇴임여부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시골프협회 선거인 후보자(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등	대의원 본인 확인 및 선거 투표 시 확인	<u>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u> <u>○년 보관</u>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보자 안내가 지연되거나 투표 후보자 선정 및 투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련 후보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선거 후보자 공약 안내	<u>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u>
경기도체육회 시·군 종목단체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u>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u> <u>○년 보관</u>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투·개표 참관인 제출 양식]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시골프협회 선거 투표·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선거일 투표·개표 참관인 본인 확인	<u>선거 후 법적 확인 관련</u> <u>○년 보관</u>
	성명, 전화번호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개표 참관인으로의 선정 및 선거당일 본인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용인시골프협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u>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u> <u>○년 보관</u>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